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실태와 현황

정 해 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I. 머리말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정 패러다임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재정분야에서도 과거 『단년도에 국한된 예산편성·재정당국 중심·투입위주』의 재정운용에서 『중장기 재정계획·각 부처의 자율·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일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재정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그동안 재정당국이 독점해온 예산편성권을 각 부처와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부처의 전문성이 발휘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제도시행 첫 해이지만 예산 과다요구 등 해마다 반복되어온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

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운영중인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지방재정에서의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도입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그 동안에 제기된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이의 해결을 위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경과와 제도도입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변경 등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2003년도 시범실시 결과와 2004년도 전면실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제도운영이 예산편성 관행 등에 미친 영향 및 앞으로 보완내지 검토할 사항 등 제도운영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도입배경

1. 문제제기

그 동안 우리나라 예산편성은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져 왔다.

상향식 예산제도 하에서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예산처가 세부 사업별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역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쌓아서 부처별, 분야별 지출규모 및 총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상향식 예산편성은 재정당국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미시적·사전적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세입여건에 따라 지출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집권적·미시적 통제 방식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예산편성에 의할 경우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어렵게 된다.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문제와 같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저하되고,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다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부처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분야별 우선순위와 총지출 규모를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개별사업을 검토한 후 분야별·총지출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인 자원배분이 곤란해져 국가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는 책임성과 자율성이 유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 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재정당국은 한정된 가용재원의 제약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과도한 부처 요구를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상향식 예산편성으로는 정책과 예산의 연계가 어렵고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

〈표 1〉 예산안 편성과정

기 한	주요 절차	비 고
3월 31일	·예산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 → 각 부처
5월 31일	·예산요구서 제출	·각 부처 → 기획예산처
6~9월	·예산편성	·분야별 요구수준 분석 및 심의방향 마련 ·사업별 검토 및 예산안 작성 ·예산안 심의
10월 2일	·예산안 국회제출	·정부 → 국회

이 매년 되풀이 되며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

2.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04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각 부처는 물론 기획예산처도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시행을 통한 제도보완을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1단계(2003년)에서는 예산규모가 크지 않고 구조가 복잡하지 않는 4개 기관¹⁾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단계(2004년)에서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하며 2005년부터는 그 동안의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2〉 재정·세제개혁 5대 목표 및 15개 과제

재정분권 추진	1.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이양 2. 자주재원 확대 및 균형발전 촉진 3.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
세제·세정 합리화	4.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5. 조세의 형평성 제고 6. 편안하고 부드러운 납세환경 조성
지출효율성 제고	7.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 구축 8.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Top-down 제도 도입 등) 9. 재정지출구조 개혁 10. 공기업 등의 경영혁신
재정투명성 제고	11. 재정·회계 인프라 정비 12. 재정운영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재정건전성 견지	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14.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관리 강화 15. 국가채무관리시스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무위원토론회 개최 등의 계획수립 절차,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부처내 자체 예산편성 방식과 절차 등 새로운 제도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부처의 협조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전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2.25)를 시작으로 차관회의(3.9), 대전청사 및 수도권 청단위 기관장 간담회(3.10, 3.12), 전 부처 예산담당관 워크숍(4.2) 등을 통하여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각 부처의 사전 준비를 독려하였다.

3. 제도비교

가. 자원배분 절차·주체·특징

기존의 상향식 예산편성 방식에서는 재정당국이 중심이 되어 정부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 자원배분은 부처요구 → 사업별 예산규모 확정 → 분야별·부처별 지출규모 확정 → 총 지출규모 확정 순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예산제도 하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 되고 단년도 예산편성에 치중하여 미시적·단기적·경기동행적으로 재정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하에서는 편성주체, 방식 및 예산과정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 자원배분은 5개년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중심이 단년도 예산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이동하게 되고 개별 사업위주의 미시적 분석보다는 거시적·전략적 분석과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예산편성 작업 등의 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간 갈등과 경쟁보다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어 예산 편성과정에서 각 부처 자율이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존 예산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특징은 <표 3>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나. 예산편성 순기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의 도입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 역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 상향식 제도 하의 예산편성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5월 31일) 후 국회제출(10월 2일) 전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예산제도 하에서의 예산편성은 사실상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시작하는 매년 1월부터 시작되어 국회제출 전까지 9개월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표 3〉 기존 예산제도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비교

구 분	중전 (Bottom-up)	현행 (Top-down)
◦ 재원배분순서	지출총액	지출총액
	↑	↓
	분야별·부처별 예산 규모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	↓
	사업별 예산 규모	사업별 예산규모
◦ 편성기간	4개월(6~9개월)	9개월(1~9월)
◦ 주요특징	▪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	▪ 거시적, 전략적 재원 분석
	▪ 단년도 재정운영	▪ 중기적 재정운영
	▪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통제	▪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율 확대 및 사후 성과관리 강화
	▪ 예산처 중심의 편성	▪ 중앙관서와 예산처가 합동편성

기존 예산제도와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예산편성 과정은 〈표 4〉와 같이 비교될 수 있다.

Ⅲ. 제도운영 현황

1. 2003년도 시범실시

2003년도의 2004년 예산안 편성 시 일부 기관에 대하여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가. 대상기관 선정

시범실시 대상기관은 자체 세입으로 운영되는 기관, 사업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기관 중에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4개 기관으로 결정되었다.

나.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부처별 지출한도를 어떻게, 얼마나 결정하는 것이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의한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정된 지출한도가 사전합의 또는 구속력이 없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각 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게 되어 주어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하에서는 부처별 지출한도가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설정되고 전국무위원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위원토론회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었고 시범시행 부처가 주로 경상경비적 사업비 비중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대상기관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표 4〉 예산과정의 비교

종전 (Bottom-up)	현행 (Top-down)
▪ 각 부처 신규·주요계속 사업의 계획 제출 (2월말) ▪ 재정당국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31)	1 월 ◦ 각 부처 장기 지출전망 제출 ▪ 신규·주요계속 사업의 계획을 제출
	2 월 ◦ 재정당국 사전 준비 ▪ 거시전망, 성과평가 결과 분석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수립
◦ 각 부처 예산 요구 ▪ 부처별로 전년대비 20 ~ 190% 수준으로 예산 증액 요구 ※ 재정당국 내부에서 분야별 지출규모를 검토	3 월 ◦ 국무위원 토론회 ▪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 재정당국 5개년 지출총액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협의 도출
	4 월 ◦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 재정당국 예산 편성 ▪ 사업별 소요 점검 ▪ 분야별 자원배분 ▪ 지출총액 확정 ◦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5 월 ◦ 각 부처 예산 요구 ▪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원배분
	6 월 ◦ 재정당국 협의·보완 ▪ 한도와 기준을 감안하여 협의·보완
	7 월 ▪ 국무위원 토론회 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
	8 월 ◦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9 월 ◦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소요, 과거 예산 규모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출한도가 도출되었다.

다. 제도운영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기관 모두는 사전

에 설정된 한도를 충실히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기획예산처는 각 기관의 요구내용이 예산 편성지침과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원칙적으

로 부처안 대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다만, 부처간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거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 특정한 비목이 과도하게 증감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조정하고 여타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2. 2004년도 전면시행

2003년도 시범실시 후 2004년도에는 200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대상기관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가. 대상기관 선정

2004년도에는 53개 전체 중앙관서 중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5개 독립기관²⁾을 제외한 4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지출한도 결정

2005년도 예산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는 지난 3월의 대통령 탄핵으로 당초 예정했던 국무위원토론회를 통해서 설정할 수 없었다.

예산편성 일정상 4월말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전문가 작업반 운영 및 각 부처와 실무협의

를 거쳐 마련한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근거하여 잠정지출한도를 설정하였다.

비록, 사후적이긴 하나 지난 6월 19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 국무위원이 참여한 국무위원토론회를 개최하여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대한 토론과 새로 도입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각 부처별 시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다. 제도운영 결과

4월말에 각 부처에 통보된 잠정지출한도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법정기한인 5월 31일에 '05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 48개 소관 중 37개 소관이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소관의 경우에도 지출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다수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을 요구하거나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를 지출한도보다 증액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라. '05년도 예산편성 방식

기획예산처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고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사업 구조를 조정하여 제출한 요구내용은 최대한 존중할 계

2) 예산회계법 제29조에 의해 이들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등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

확이다.

다만,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 사업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대규모 재원소요를 유발하는 신규사업, 부처별 중복투자 및 계속사업의 연차별 적정 재원배분 등을 중점 점검하여 부처와 협의·보완하여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 5〉 참조).

〈표 5〉 「'05예산안 편성지침」상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 국정과제 사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 중앙관서간, 중앙·지방간, 민간과의 역할 분담 관련 사항 ◦ 중앙관서간 업무중복 또는 역할분담에 관련되는 사업 ◦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구분과 관련되는 사항 ◦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되는 사항
☐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중앙관서간 형평성 등 타사업에 과급효과가 큰 사업 ◦ 대규모 재원소요를 수반하는 신규사업 ◦ 사업별 편성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 ◦ 주요 성과관리 대상사업 ◦ 인건비, 조직·인력 증원, 민간단체 보조, 업무추진비, 채무상환 등 공통기준 적용 경비
☐ 통합적 재원관리 관련 사항 ◦ 재특,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과 관련되는 사항

IV. 운영실적 평가

1.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시행기간이 짧아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각 부처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매년 반복되어온 과다요구 관행이 사라지는 등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들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진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과도하게 요구할 유인이 사라져 과다요구·대폭삭감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53개 중앙관서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05년도 예산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예년의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예산요구 관행이 사라지고 금년에는 요구증가율이 5%대로 대폭 낮아지게 되었다.

〈표 6〉 예산요구 증가율 추이

(%)

구 분	'01	'02	'03	'04	'05
·일반회계	32.2	29.9	25.8	30.8	11.7
·특별회계	16.4	16.8	33.1	15.6	△6.7
·일반회계+특별회계	25.3	24.5	28.6	24.9	5.0

〈표 7〉 예산감액요구 사례

(전년예산대비 증가율)

구 분	'02요구	'03요구	'04요구	'05요구 (요구액)
▪ 도로건설	33.4%	33.1%	12.5%	△8.4% (7.4조원)
▪ 일반공항	3.5%	53.8%	19.8%	△25.2% (1,493억원)
▪ 신용보증기관 출연	8.8%	0.6%	5.0%	△15.3% (5,000억원)
▪ 국립학교 시설	16.0%	28.3%	30.0%	△0.5% (2,554억원)
▪ 국립문예기반시설	27.6%	54.0%	19.6%	△21.8% (575억원)

둘째, 각 부처가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므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위주로 반영하고 그 외 사업은 규모를 줄이게 됨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5년도 예산요구서의 경우 연례적으로 증액을 요구하던 사업을 감액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셋째, 분야별 지출규모가 국무위원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므로 주요 국정과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많은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등 국정과제 사업들을 대폭 증액요구하였다.

넷째, 상향식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장기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재정당국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사업추진이 불확정적인 경우가 있었으나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하에서는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재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므로 국가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향후 발전과제

지금까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시범실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표 8〉 국정과제 사업 증액요구 주요 사례

(억원)

구 분	'04예산	'05요구	(증가율)
▪ 지역특화산업 육성	2,345	3,600	53.5%
▪ 인천공항 2단계 신설	1,374	2,273	65.4%
▪ 국민임대주택	7,428	9,495	27.8%

보완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2004년도의 경우 정치적 이유로 국무위원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한 채 각 부처에 잠정 지출한도가 설정됨에 따라 '05년도 예산조정 과정에서 보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2005년부터는 국무위원토론회를 거쳐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고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의 틀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단계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확정, 부처별 예산요구 한도 설정, 각 부처의 예산 자율편성 과정에서 입법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나. 부처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에 따라 부처의 자율성이 제고되어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과 더불어 2008년 제도 정착을 목표로 각 부처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성과관리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성과지표의 발굴, 성과측정 기법의 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환류 방법 등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각 부처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V. 맺음말

자율과 분권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와 사회의 가치관, 대내외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각 부처에 자율과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책임이 함께 커지고 어렵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게 된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재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합리성·타당성 못지 않게 운영주체들의 자발적인 혁신의지와 실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도시행 주체인 기획예산처는 예산요구 기준과 지침을 계속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에 적합한 예산편성 절차를 마련해 나가고, 각 부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 조기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